

【 5 】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2. .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07.9.20)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추정 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로 확대 운영하며
-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에서 50억원이상 공사(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억원이상에서 10억원 이상)로 상향 조정 함.(안 제4조제1항)
- 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3천만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운영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 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조정 함 (안 별표)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30억원” 을 “50억원” 으로 하고, “5억원” 을 “10억원” 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10억원” 을 “100억원” 으로 한다.

별표의 주민참여감독자의 금액(원)란의 “10,000(1일)” 을 “20,000(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입 안 자	담당과장	회계과장	민무식
	담당주사	계약담당	김남권
	담당자	송수진(☎ 031-820-227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추정가격 <u>30억원</u>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u>5억원</u> 이상)을 말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p>	<p>제4조(기능) ①————— ————— 50억원—————(————— 10억원—————) ————— 제11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u>10억원</u>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주민참여감독자</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u>10,000(1일)</u></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월20일을 초과할 수 없음</td> </tr> </table>	주민참여감독자	<u>10,000(1일)</u>	월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p>[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hr/></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u>20,000(1일)</u></td> <td style="width: 33%;"><hr/></td> </tr> </table>	<hr/>	<u>20,000(1일)</u>	<hr/>
주민참여감독자	<u>10,000(1일)</u>	월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hr/>	<u>20,000(1일)</u>	<hr/>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9.20 대통령령 제20283호]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07.9.20>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0.09 조례 제273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양주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 3 조 (임무 및 임기)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 ·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을 말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회의소집 및 심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으로, 서기는 심의대상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 6 조 (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1 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노인시설, 영유아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 12 조 (수당 및 여비 등)

-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과 계약담당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